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48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공익법무관 조민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현식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18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11. 30.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18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D 사이에 2019. 11. 30.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손님으로 종종 찾아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원고에게 '나는 F 양고기 식당을 지인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는 친구가 가방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방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가방 구매대금, 양고기 구매대금, 소송비용, 사업자금, 생활비, 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1,5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8,97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194 사기로 공소제기되어 원고는 위 사건에 배상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31. 위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D은 원고에게 82,59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G는 상속인으로 처인 H, 직계비속인 D, 피고 B, C(법정 상속지분 H 3/9, 나머지 상속인들 각

2/9)을 두고 2019. 11. 30.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H과 피고들 및 D 사이에서 2019. 12. 26. 망인이 소유하던 경상북도 예천군 I 답 1,147㎡와 J 전 271㎡를 H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나머지 지분은 H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과 피고들이 각 1/6 지분씩 나누어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기하여 2020. 1. 6. H과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발생해 있었던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는 D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구 K주민센터에 대한 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G가 사망한 후 H은 법무사 L에게 C의 상속포기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의뢰한 사실, G가 사망할 당시 위 사기범행 등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재감 중이던 D은 지인에게 2019. 12. 9. 용도를 '상속포기'로 하는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 그런데 법무사 L은 D의 위임취지와 달리 2019. 12. 26.자로 위와 같이 D을 공동상속인으로 포함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위 위임장에 기재 발급받은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협약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3. 10. 1985므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상속포기 절차를 위임한 공동상속인 D의 의사를 분할협의 위임으로 오인한 위 법무사의 착오에 기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하여는 D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수여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한 D의 의사표시에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점, 상속부동산의 분할협약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득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그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그 외관도 제거할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 등 관련 법리를 종합해보면, 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 지 목 록

1. [토지] 서울 강남구 , 대, 330.7㎡

2. [건물] 서울 강남구

[도로명주소] 서울 강남구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64. 45㎡, 2층 164. 45㎡, 3층 164. 45㎡, 4층 164. 45㎡, 5층 164. 45㎡, 지층
165.75㎡

층별용도:

1층, 지층 - 소매점,

2층 - 의원

3층 - 사무실

4층 - 사무실 82.22, 주택 82.23

5층 - 주택. 끝.

1) 단,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채무면탈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분할협의와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